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46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3호, 2016.7.31. 공포, 2016.8.1. 시행) 및 하위법령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금융회사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일부 법조항의 해석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초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기한 명확화(안 제3조)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선·해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기한 명확화(안 제5조)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제정·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관련 기준의 명확화(안 제9조)

- 1)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때에는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도록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형태로 지급하거나, 이연지급 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회사의 손실과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환수·차감하는 형태 등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 2)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성과보수를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의무화

라. 내부통제기준 운영 규정 정비 및 전담조직 마련 의무 완화(안 제11조)

- 1)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 전담조직에 준법감시인 이외에 별도의 지원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
- 2) 금융회사의 지점장이 그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업무를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의무 완화(안 제13조)

- 1)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 전담 조직에 위험관리책임자 이외에 별도의 지원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33,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tthju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